

## 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관리 방안

- 
- I 대학 공개강의의 특성과 저작권 주요 쟁점
  - II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저작권법상 이슈
  - III 대학 공개강의 저작물 제작 유통을 위한 관리 기준
  - IV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절차 및 공정이용 체크리스트
  - V 대학에서의 저작권 관리 체제 방안





## 집필진

변용완(중앙대학교)

김홍래(춘천교육대학교)

## 연구·기획

장상현(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보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4년 대학 정보화 활성화 사업 연구  
비로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 〈 목 차 〉

I. 대학 공개강의의 특성과 저작권 주요 쟁점 .....	1
1. 대학 공개강의의 특성 .....	1
2. 저작권 관련 법·제도의 현황 .....	3
3. 공개강의와 관련된 저작물 이용 .....	9
II.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저작권법상 이슈 .....	30
1. 교수학습자료의 저작권 관리와 체제의 문제 .....	30
2. 대학 교원이 작성한 교수학습자료에 관한 저작권 귀속 문제 .....	32
III. 대학 공개강의 저작물 제작 유통을 위한 관리 기준 .....	37
1. 대학 공개강의 저작물 서비스 유형 및 단계 .....	37
2.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 단계별 저작권 .....	38
IV.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절차 및 공정이용 체크리스트 .....	41
1. 저작권 체크 포인트별 체크리스트 .....	41
2. 체크 포인트 해설 .....	42
V. 대학에서의 저작권 관리 체제 방안 .....	46
1. 대학에서 저작권 관리 체제(안) .....	46
2. 저작권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별 가이드라인 .....	48
3. 대학에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저작권 계약 관리 .....	51

## 〈 표 차례 〉

<표 2.1> 저작권 관련 저작물의 대학에의 귀속	31
<표 2.2> 교수학습자료 제작과정의 권리 귀속	31
<표 5.1> 대학과 교원간 강의용 콘텐츠의 권리 귀속	51

## 〈 그림 차례 〉

[그림 1.1] 지적재산권의 구성도	4
[그림 1.2] 저작권의 체계 및 설명	6
[그림 1.3] 타인의 저작물 이용 절차	8
[그림 1.4]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	12
[그림 1.5] 교육기관에서 저작물 등의 공정 인용	21
[그림 1.6] 교육기관에서 저작물 등의 공정 이용	27
[그림 1.7] 저작물 이용의 단계	29
[그림 3.1] OCW의 콘텐츠 게재 프로세스	38
[그림 3.2] IP 심사 및 처리 절차	39
[그림 3.3] 타인의 IP 허락 및 이용 절차	40
[그림 5.1] 조직체계 신설(안)	47

# I. 대학 공개강의의 특성과 저작권 주요 쟁점

최근 정보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기술이 활용되면서 교육 정보화 및 e-learning 등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발전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는 e-learning은 기존의 교실강의 형태에서 없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어 더욱더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이러한 교육정보화 및 e-learning의 진흥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1. 대학 공개강의의 특성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등 교육기관의 강의실 풍경은 교원의 강의에 교재 등 인쇄 자료를 설명하고, 이것을 보충하는 시청각 교재로서 TV, 비디오 등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한 교재(매체)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네트워크 사회는 다수의 저작물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저작물을 폭넓게 그리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 정보의 공유 활성화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지식 정보사회에서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Open Course Ware(OCW)이다. OCW는 대학 등에서 정규 수업에 제공된 강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대학의 강의로 사용되는 강의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일정 범위에서 이용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강의 노트, 수업에서 배포된 자료가 PDF파일 등으로 제공되는 것 외에, 강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2002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sup>1)</sup> 우리나라로 2008년 12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09년 3월 대학 우수 강의에 대한 동영상 촬영 지원 및 서비스를 시작하였다.<sup>2)</sup>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의 공개 시 수업에서 활용되었던 교수학습자료의 저작권 저촉 문제에 대하여 많은 교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OCW의 활성화의

1) <http://ocw.mit.edu/about/our-history/>(2014년 9월 방문). 또한, 이를 기점으로 2002년 UNESCO 포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 공개교육자원(Open Education Resources : OER)은 전 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자원을 함께 개발하자는 교육운동으로 확대되었다.

2)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cw.net/home/introduce/intro1.do> 참조(2010년 7월 방문).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OCW 저작권의 주요한 문제는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분쟁이다. 사실 이것은 OCW 강좌의 교재를 완전히 온라인화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담당직원이 상당히 많은 내용의 저작물들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이트 내에 게재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승인과 양도를 얻는 것이 곤란하다. 오픈 코스 웨어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규의 수업 강의를 인터넷상에서 무상 공개하여, 대학의 지적 산출물을 폭넓게 유통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로 인하여 참여 내지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OCW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기관에서는 다량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의 문제(권리 귀속이나, 관리하여야 할 저작물의 범위, 방법 등)는 산적해 있고, 이와 더불어 저작권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대학에서 이용되는 저작물 가운데 대학이 저작자가 되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결코 많지 않다. 따라서 대학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허용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다. 국내외 많은 대학들이 OCW를 서비스할 때 이용허가 방법으로 Creative Commons License(CCL)<sup>3)</sup> 또는 자유 이용 마크제도<sup>4)</sup>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교육 목적으로의 이용자 측면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강의 자료의 개발 및 등록 측면에서의 저작물 탑재 부분에서의 저작권 관리 측면은 매우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전제되는 현행 저작권 제도<sup>5)</sup>를 유지하면서 저작물 등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는 구조의 구축

3)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정의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이다. 저작자는 저작표시(A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등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해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를 설정,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CCL은 저작자입장에게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 상업적인 옵션의 선택도 포함한다. 따라서 CCL은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사람은 물론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저작자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4)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많은 이용자에 의해 자유이용 되기를 희망하는 저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인 “자유이용 마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요청에 부응하여, 2003년 “자유이용마크”, 즉 “복제(프린트 출력 · 복사 · 무료 배포) OK”, “장애자(장애인)를 위한 비영리 목적” OK”, “학교교육(학교 교육을 위한 비영리 목적 이용) OK”의 3종류의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도모하고 있다(文化庁「自由利用マーク」 [www.bunka.go.jp/jiyuriyo](http://www.bunka.go.jp/jiyuriyo)).

5)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이 교육 자료의 공개 및 공동 활용의 영역으로부터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 대학에서의 저작권 관리 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국외 대학에서의 저작권 관리체제를 검토하여 저작물 제공의 측면에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저작권의 일반 내용들을 우선 살펴보고, 공개강의 저작물의 저작권 주요 쟁점 및 저작물 제작 유통을 위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겠다.

## 2. 저작권 관련 법 · 제도의 현황

### 가. 저작권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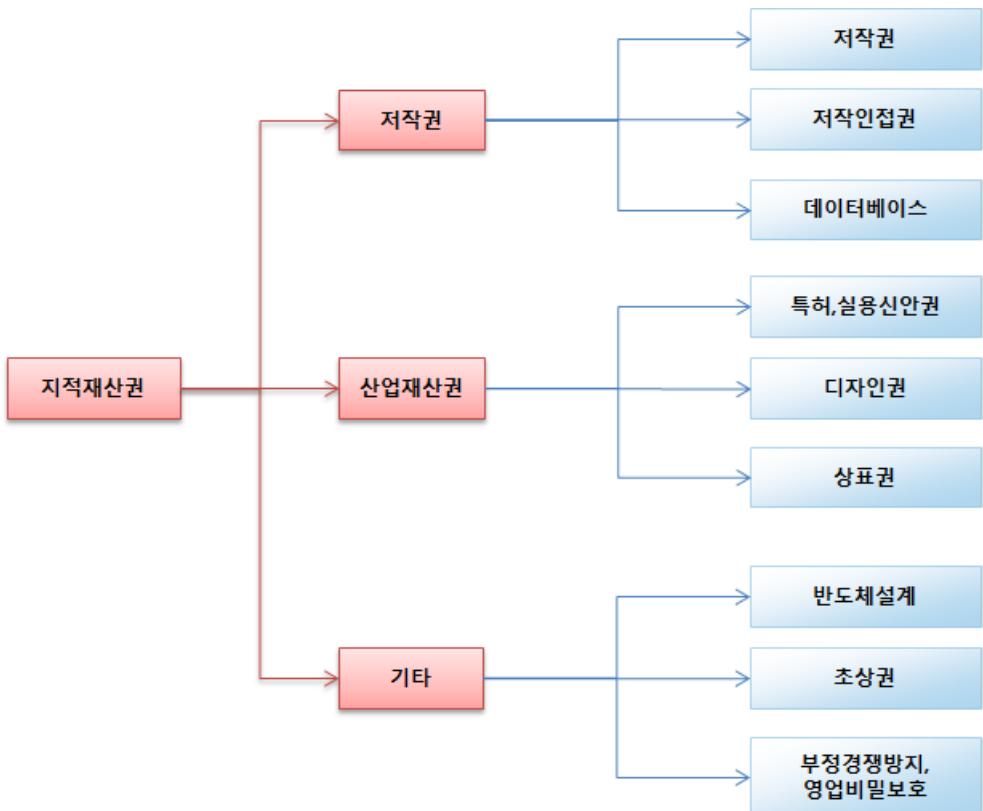
저작권이란 창작자에게 법률로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저작물<sup>6)</sup>)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어떠한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이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가 필요 없다. 즉,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하여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출원등록을 해야 하는 산업재산권과는 다르다.

저작권은 우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구별된다. 지적재산권이 저작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체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산업체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으로 얻어진 발명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등록 상

제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6) 저작물(著作物)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문학 작품(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미술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성이다. 독창성은 저작물의 범주에 따라 그 정도가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작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베끼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표현한 것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로서 저작물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독창적인 표현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양과 표현 방법도 판단의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다. 독창적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특허 등이 해당한다. 반면, 저작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으로 얻어진 예술 등과 같이 정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문학작품, 음악, 미술 등이다.<sup>7)</sup>



[그림 1.1] 지적재산권의 구성도

#### 7) (저작권과 산업체산권의 차이점)

구분	저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보호대상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물건, 방법 또는 물건의 생산 방법의 발명)	공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물품 및 글자체의 심미적 외관)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
권리발생시기	창작의 완료 시	설정등록 시	설정등록 시	설정등록 시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까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단 10년마다 갱신 가능

\*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나.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 등 인격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다. 작품을 쓴 사람의 이름이 바뀌거나 작품의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작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나 이전될 수 없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있다. 또 후자에는 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기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하는 권리이다.<sup>8)</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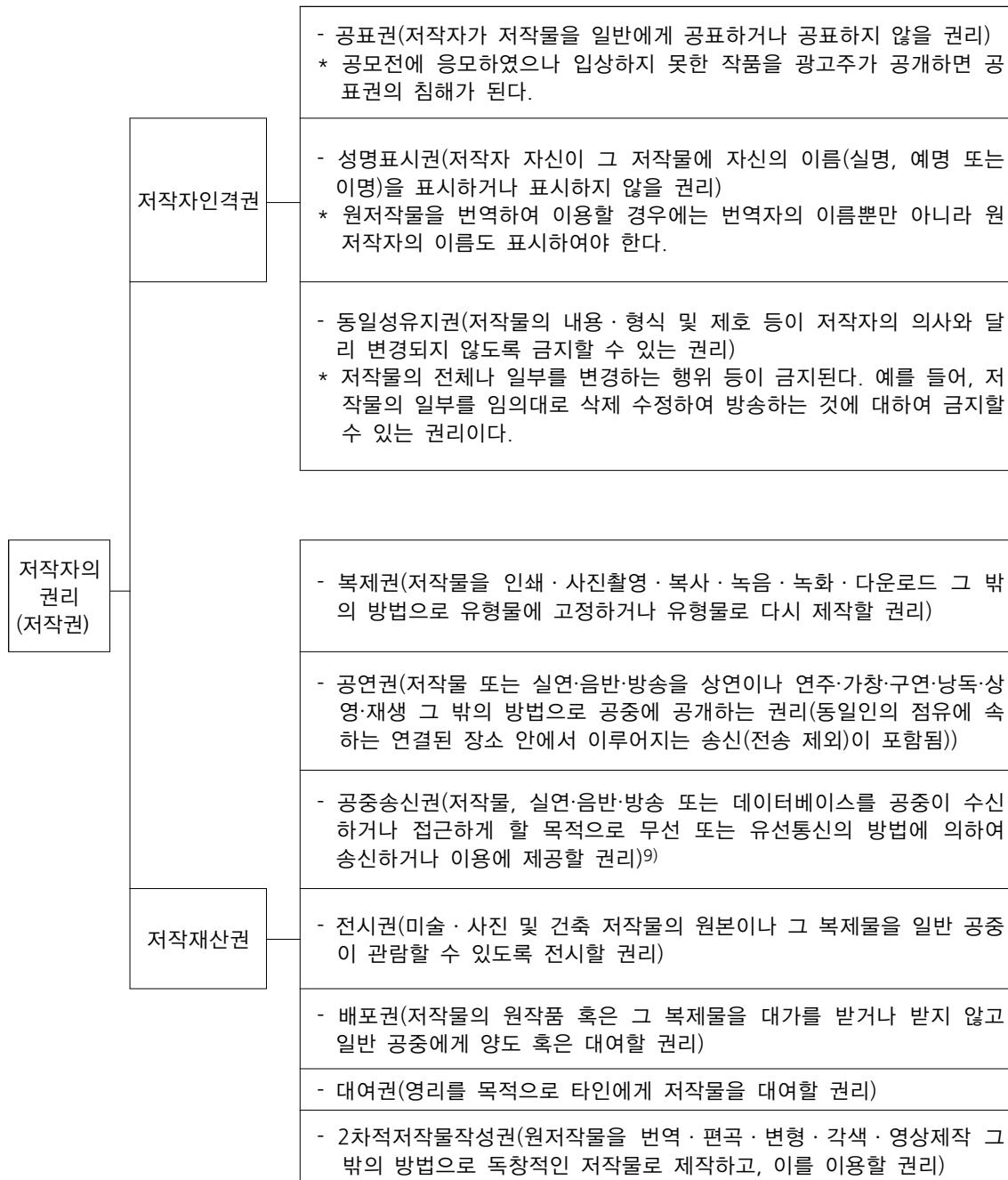
### 8) ① 저작인접권자 :

-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②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 ▶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생실연)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증계방송권

이처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됨. 또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때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함.



[그림 1.2] 저작권의 체계 및 설명

9)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 1)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저작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저작물 이용 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 제한 사유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 2) 교육 관련 주요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3)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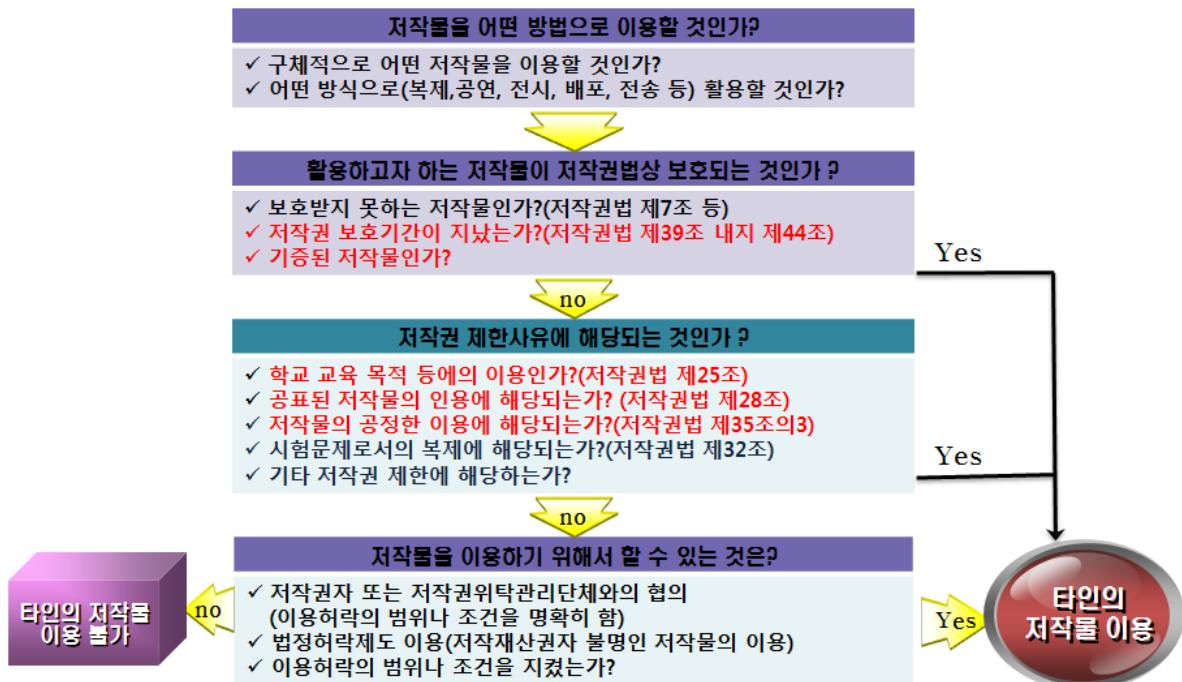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4)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①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5) 출처의 명기(제37조)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라. 타인의 저작물 이용 절차



〈그림 1.3〉 타인의 저작물 이용 절차

### 3. 공개강의와 관련된 저작물 이용

OCW활용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학습자료들을 교재로서 이용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저작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저작물 등의 이용방법이 저작권자가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 라. 저작물 등의 이용이 저작권법상의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한다(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가. 해설 :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저작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OCW활용 교육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유선 방송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작성자의 생각이나 기분을 그 사람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면 저작물의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이나 생각 자체는 저작물은 아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데이터는 학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다고 해도, 그 자체는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또한, 학설, 사상, 자연과학상의 법칙, 발견, 명제의 해명 과정, 순서·방법도 그 자체는 생각(아이디어)이며, 표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이러한 것을 해설한 문장이나 도표는 그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sup>10)</sup>

#### 나. 해설 : 저작물 등의 이용방법이 저작권자가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등을 복제, 공연, 전송 배포 등을 할 권리 등이 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 등이 가지게 되므로 타인의 저작물 등을 복제하거나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게 된다. 저작물 등의 이용이 저작자 등이 가진 권리에

10) 岸本 織江, 教育用コンテンツ開発にあたって利用する既存の素材の著作物性, 独立行政法人メディア教育開発センター(平成 20年(2008年)2月).

저촉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구입한 서적을 교실 등에 비치해 두어, 학생 등이 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계약은 필요 없다. 오히려 OCW 활용 교육에서는 서버에 축적(복제)하거나 학생에게 전송(공중송신) 등 저작자 등이 권리를 가지는 이용방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다. 해설 :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또는 유선 방송의 보호 기간이 종료하고 있는 경우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 (참고) 원칙적인 보호 기간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예) - 헤밍웨이 : 1961년 사망(보호기간 기산점 및 종료시점 : 1962. 1. 1. - 2011. 12. 31.)  
- 헤르만 헤세 : 1962년 사망(보호기간 기산점 및 종료시점 : 1963. 1. 1. - 2012. 12. 31.)

: 예를 들어,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A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A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A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 시행일(2013년 7월 1일)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A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 [참고 : 각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 미국, EU회원국,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러시아, 터키 등은 70년이며, 일본, 중국, 캐나다, 대만, 태국, 뉴질랜드 등은 50년이다.

\*\* 일본 소설을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년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 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 + 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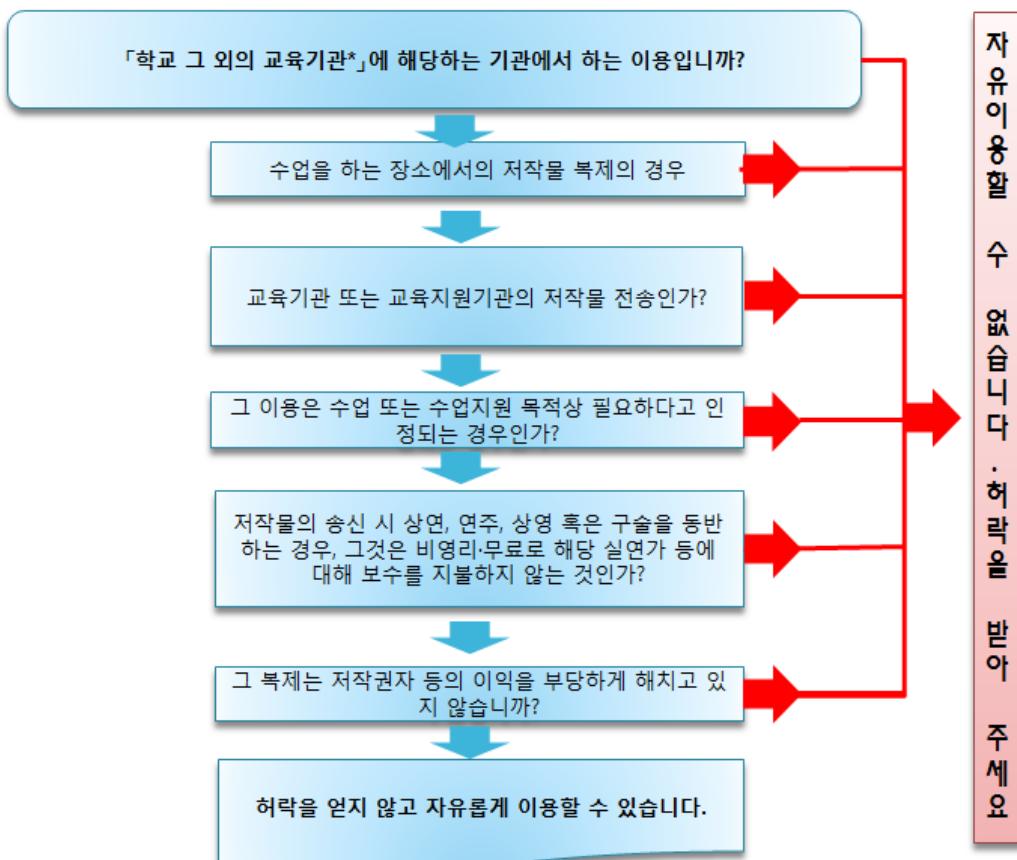
#### 라. 해설 : 저작물 등의 이용이 권리 제한으로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은 권리제한규정으로 불리 우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래형 대면 수업에 있어서 권리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OCW활용 교육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1)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저작권법 제25조)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기관과 수업목적의 범위 그리고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이용 주체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범위 제한)	이용 형태	이용 목적 (수업 또는 지원 목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제도 (보상금제 도)	전송의 경우 저작권 보호제도 (기술적 보호조치)
초·중등 교육법	초등학교 · 공민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면제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 i.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조치,
고등 교육법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기술대학 등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수업 또는 지원 목적 상 필요하 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ii.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 제방지조치,
국가 · 지방자 치단체가 운영 하는 교육기관 및 국가 · 지방 자치단체에 소 속된 교육지원 기관	중앙 및 지방공무원연수원, 각 시도 교 육연수원 등(공무원교육훈련법)			보상금 지급 대상	iii.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의 표시, iv.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 기 위한 장치의 설치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그림 1.4]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

### (1) 교육기관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상의 특수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있다.

둘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이상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등이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등이 있다.<sup>11)</sup>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라 함은 상술한 특별법과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이외에 중앙공무원교육원, 시도 교육청 및 소속 교육지원기관,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한 시도 교육연수원, 시도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수련회관 등을 의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sup>12)</sup>

### (2)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무제한적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이용이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11) 이 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35조(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에서는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은 본조의 해당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회사 등이 개설한 직원연수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9년 8월 발간한 개정 저작권법('09.4.22 공포, '09.7.23 시행)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각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지원기관 구성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학교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저작권법 해설(2009.8), 29면.

‘수업목적’을 좁게 해석하면 수업 과정, 즉 시간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한정되고 수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해석된다. 일본의 경우 ‘수업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저작권법』 제35조<sup>13)</sup>)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업목적’을 좁게 해석하면 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업목적’을 좁게 해석하여 아예 입법한 것인데 일본의 해석에 따르면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교과로서의 수업 외에 특별활동인 운동회 등의 학교행사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이 포함되며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강의, 실험, 실습, 세미나 등도 포함되지만 과외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sup>14)</sup> 하지만, 일본의 저작권법 제35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등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이 부과된 것으로 일본의 경우를 바로 우리나라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수업목적’을 넓게 해석하면 수업 전, 수업 시간, 수업 이후 전반에 걸쳐 수업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전반적인 이용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한 이러닝 등 새로운 교육 정보시스템(교육기관내의 서버를 이용한 시스템)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교수나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과 연대에 의한 학습지도 활동이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한 복제물을 그 교육기관의 서버 등에 축적하는 등의 공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수업목적’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수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의 종류, 사용목적, 방법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3) 著作権法(平成二一年(2009年)七月十日 法律 第七三号) 제35조(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① 학교 기타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 수업과정에서 사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복제부수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항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과정에서 당해 수업을 직접 받는 자에 대해서 당해 저작물을 그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제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당해 저작물을 제38조 제1항(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연 등)의 규정에 의해 상연, 연주, 상영 혹은 구술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수업을 받는 자에 대해서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당해 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加戸守行, 『著作権法 逐條講義』 4版, 社團法人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54頁.

### (3) 전송의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 의한 ‘저작권법시행령’ 제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접근 제한 조치는 접근통제를 위한 회원관리와 로그인, 복제 방지 조치는 복제 방지를 위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금지, 파일저장 금지, 다운로드 금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적 형태가 아닌 복제, 예를 들면,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은 가능하다.

복제 및 접근 통제와 관련하여 모든 저작물에 DRM<sup>15)</sup>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DRM을 적용하는 것이 저작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수업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크다. 오히려 DRM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및 그 이하의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회원관리, 저작물 복제 및 저장을 금지하기 위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금지, 다운로드 금지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경고 문구를 학교 홈페이지 및 학급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으로 저작물임을 밝히고, 무단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의 디지털 교과서의 확산과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제안하였다.

15)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인터넷을 통한 유료 콘텐츠의 안전한 배포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 통제 기술이다.

다음의 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권리자단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 가. 디지털파일, 웹 형태로 제공되는 내용 중 화면 단위의 복제 및 저장
- 나. 서책과 동일한 형태의 디지털교과서(PDF 파일)의 다운로드. 단, 해당 교과서를 이용하는 교원 또는 학생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화면 단위로 복제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인용을 위해서도 화면 단위의 복제와 저장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권리단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4) 대학의 경우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대상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기준은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이용자는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도 도입 합의에 따라 2011년 및 2012년 보상금은 면제되었으며, 2013년도 분은 합의에 따라 「포괄방식」으로 청구된다. 다만, 2013년도 이용내역을 입증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종량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이용내역 제출 및 산정장치 인증은 2014년 3월 말까지, 보상금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종량방식」을 선택할 경우 복제방지조치, 접근제한조치, 보상금산정장치 등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수령단체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상금 지급은 동영상, 음악, 사진, 잡지 등 수업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저작물도 포함된다.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 이용방법은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으로 정하고 있다. 수업목적으로 이용행위는 여러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사

용하여 강의교재를 만들었다면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해당되고 복제된 강의교재를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였다면 저작물을 배포하고 전송한 것에 해당된다. 또한, 영상저작물을 수업시간에 상영하였다면 저작물을 공연한 것에 해당되며, 음악 저작물을 실연한 경우 저작물을 공연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모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된다.

- 2014년 개정된 보상금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6)</sup>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경우.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보상금 납부 :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 아래 보상금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납부

16)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2014.2) 참조.

## 6. 보상금 기준

### 1) 보상금 기준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문: A4 1쪽 분량 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li> <li>○ 이미지: 1건당 7.7원</li> <li>○ 음악: 1곡당 42원</li> <li>○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li> </ul>	<p>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대 1,300원</li> <li>○ 전문대 1,200원</li> <li>○ 원격대 1,100원</li> </ul>

### 2) 기준에 대한 해석

-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방식”은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的 기준 금액 감면 가능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학 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교는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7. 참고사항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的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예시】 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 2) 공정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

### (1)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는 사회적으로 저작물의 인용이 폭넓게 행해지고 있고, 저작물이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모체로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성질에 의거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을 하는 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와 강의자는 교육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3조 이하에서 열거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에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규정은 이론상, 실제상도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인연이 깊은 조문이기도 하다.<sup>17)</sup>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넣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인용문을 포함한 자기의 저작물의 이용(복제 등)에 수반하여, 인용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까지 적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의 논문 중에 본인이 주장하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오는 경우, 타인의 이론을 논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기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원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sup>18)</sup>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의 표현을 인용한 경우이다.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인용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법이 특별히 그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그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 해석상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한다.<sup>20)</sup> 다시 말해, 본조는 인용의 목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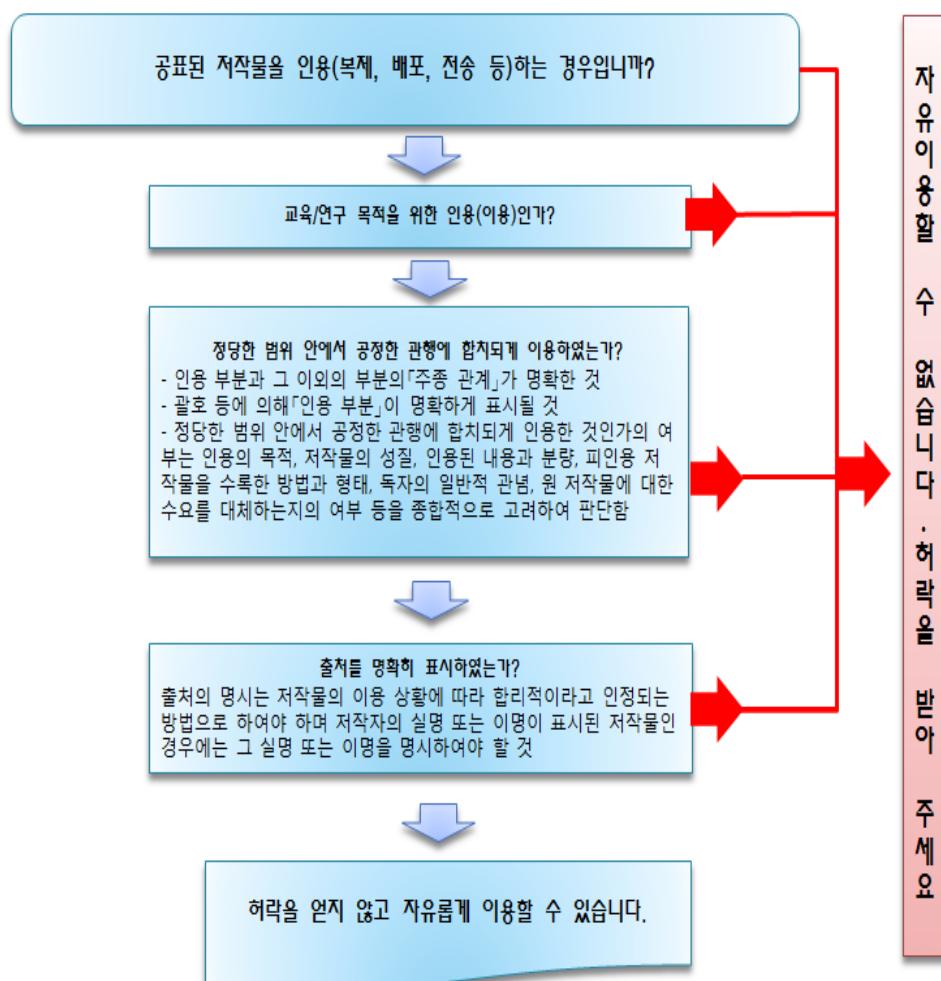
17) 川原 健司, 引用の適法要件,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最新号(第2巻), 2007.9), 57頁.

1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9.8, 590면.

19) 다른 권리 제한 규정의 대부분이 「복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특정의 이용 행위로 한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동조 하에서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언은 극히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고 있다. 이 문언은 복제 행위뿐만 아니라, 공연, 상영, 공중송신 등의 모든 저작물 이용 형태에 적용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동조항에 나타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上野達弘, 「引用をめぐる要件論の再構成」(著作権法と民法の現代的課題), 半田正夫先生古稀記念(法学書院` 2003年) 308頁.

20) 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지침이나 고시가 나와 있지는 않다. 따라

시적으로 열거하면서도 「보도·비평·교육·연구」와 같이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저작권법 제1조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본조가 들고 있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라는 요건은 저작권법 제1조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구체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추상적인 개념들이어서 실무상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sup>21)</sup>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림 1.5] 교육기관에서 저작물 등의 공정 인용

서 이러한 정당한 범위 내지 공정한 관행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1) 이형하,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 재판자료(제57집), 법원도서관, 353면.

## (2) 요건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인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공표된 저작물
- ②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③ 정당한 범위 내일 것(판례는 정당한 범위의 판단에 대하여, 주종 관계에 의하여 판단한다.)
-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될 것

### (가) 공표된 저작물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인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에 한한다. 여기에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sup>22)</sup> 저작물의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어문저작물 및 표, 사진, 회화뿐만 아니라, 영화 라디오 TV프로그램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 (나)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인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작하려고 하는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과 같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자신의 창작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는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데에 이용하는 것을 적법한 인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영리를 위한 상업광고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sup>23)</sup>

### (다) 정당한 범위 내일 것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내의 여부는 사실

2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23) 담배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판촉광고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원고가 저술한 242면으로 된 학술논문 중에서 세 문장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법원은 “본건 출판물은 학술논문도 아니고 인류의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저작물도 아니다. 오히려 본건 팜플렛은 자사제품의 판매고를 늘릴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된 것이다.”는 이유로 공정사용의 항변을 배척하였다(Henry Holt & Co. v. Liggett & Myers Tobacco Co., 23 F. Supp. 302(E.D.Pa. 1938).

문제로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sup>24)</sup> 이 때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인용을 포함한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이용자의 저작물 중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용되는 저작물이 이용자의 저작물에 종속된다고 하는 주종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우리나라의 법원과 일본의 법원<sup>25)</sup>에서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 가) 인용된 저작물의 분량과 그 중요성(양적 주종관계)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양적인 면에 있어서 인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저작물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은 종적인 존재라야 한다.<sup>26)</sup> 인용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중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내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조 · 단편 시와 같은 짧은 어문저작물이나 회화·서예와 같은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일부인용이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전부 인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문학평론가가 어느 시인에 대한 평론을 쓰면서 비평대상인 몇 편의 시를 전부 인용하는 경우나 미술사에 관한 저술에서 어느 화가의 회화 작품 전체를 인용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sup>27)</sup>

#### 나)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사이의 관계 (내용적 가치의 중요성 : 질적 주종관계)

피인용문이 본문보다 높은 존재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자기의 저작부분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은 종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종관계는 단순히 분량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질적

2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25) パロディ=モンタージュ事件 (最判 昭和55年(1980년)3月28日 民集34 卷3号244頁).

26) 오승종, 전계서, 593면.

27)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374면.

인 가치의 고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이란 자기의 저작물 가운데 종된 구성자료로서 사회통념 내지 공정한 관행상 그 인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 필요로 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자기의 저작물의 일부로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출판사가 각 대학의 본고사 국어 문제 전부를 인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형식의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문제집에도 위 각 대학의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본고사 문제 전부를 인용하여 판매한 사안<sup>29)</sup>에서, 법원은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를 ‘기출문제’라는 표제 하에 대학입시문제를 인용한 후 다시 위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유제’라는 표제 하에 각 기출문제에 연이어 싣고 있는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이상 인용된 대학입시문제가 부종적인 지위에서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학 입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인용한 목적도 교육이나 학술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영리의 목적으로 대학입시교재의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라고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sup>30)</sup>

#### (라) 공정한 관행에 합치(인용의 목적과 방법)

인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합치성은 저작권자의 경제적·인격적 이익을 지나치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문화의 향상발전 기타 공공복리에 기여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공정한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소속된 학계·언론계·교육계·예술계 등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합의지침(이른바 신사협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되어 공통된 관행이 없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양 집단을 포함한 일반사회의 통념을 기준으로 공정한 관행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sup>31)</sup>

28)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인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을 포함한 저작물의 표현형식상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을 명료하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양 저작물 사이에 전자가 주, 후자가 종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藤田嗣治繪画複製事件(東京高判 昭和60年(1985년) 10月 17日 無体集 17卷 3号 462頁).

29)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어, 논술, 영어 등의 문제집에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를 전부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용저작물은 대학진학지도라는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고, 위 문제집에서 차지하는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의 비율이 국어 9.7%, 논술 2.8%, 영어 6.9%, 수학 I 9.9%, 수학 II 9.7%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0) 서울지법 1997.8.12. 선고 97노50판결. 이에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다만, 저작물이나 실연에서는 저작자나 실연가의 인격적 이익을 위한 권리(저작자인격권 내지 실연가인격권)가 있어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자등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요건>

a.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b.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인용을 하는 필연성이 있을 것)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를 위한’ 네 가지의 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도 포함될 수 있음.

-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짐
- 다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c.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 인용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의 「주종 관계」 가 명확한 것
- 괄호 등에 의해 「인용 부분」 이 명확하게 표시될 것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d 출처를 명시할 것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할 것

31) 이형하, 전계논문, 370-371면 참조.

###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2012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합의에 따라 소위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신설하였다.<sup>32)</sup> 동 규정은 공정이용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 규정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제35조의 3에 따라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를 통일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부분이 많지만,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눈부신 변화와 발전 속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들만 적용하여서는 그것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잖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은 보충적인 측면보다는 일반적인 공정이용 규정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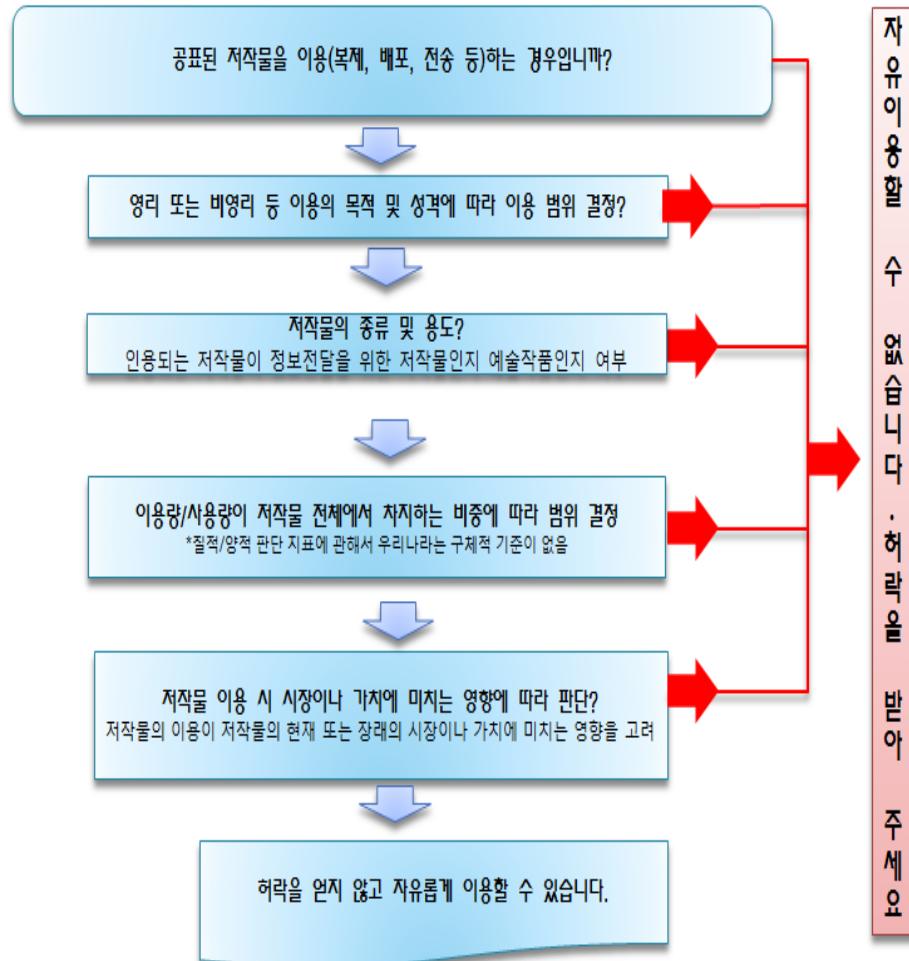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조항에 따라 소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2)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3) 사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공정사용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림 1.6] 교육기관에서 저작물 등의 공정 이용

## (가)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① 이용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인지 여부
- ② 이용이 사적(私的)인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③ 이용이 '생산적 이용'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④ 이용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⑤ 이용이 '부수적 이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⑥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이 정당한지 여부 등

##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의 성질이 창작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가의 문제

(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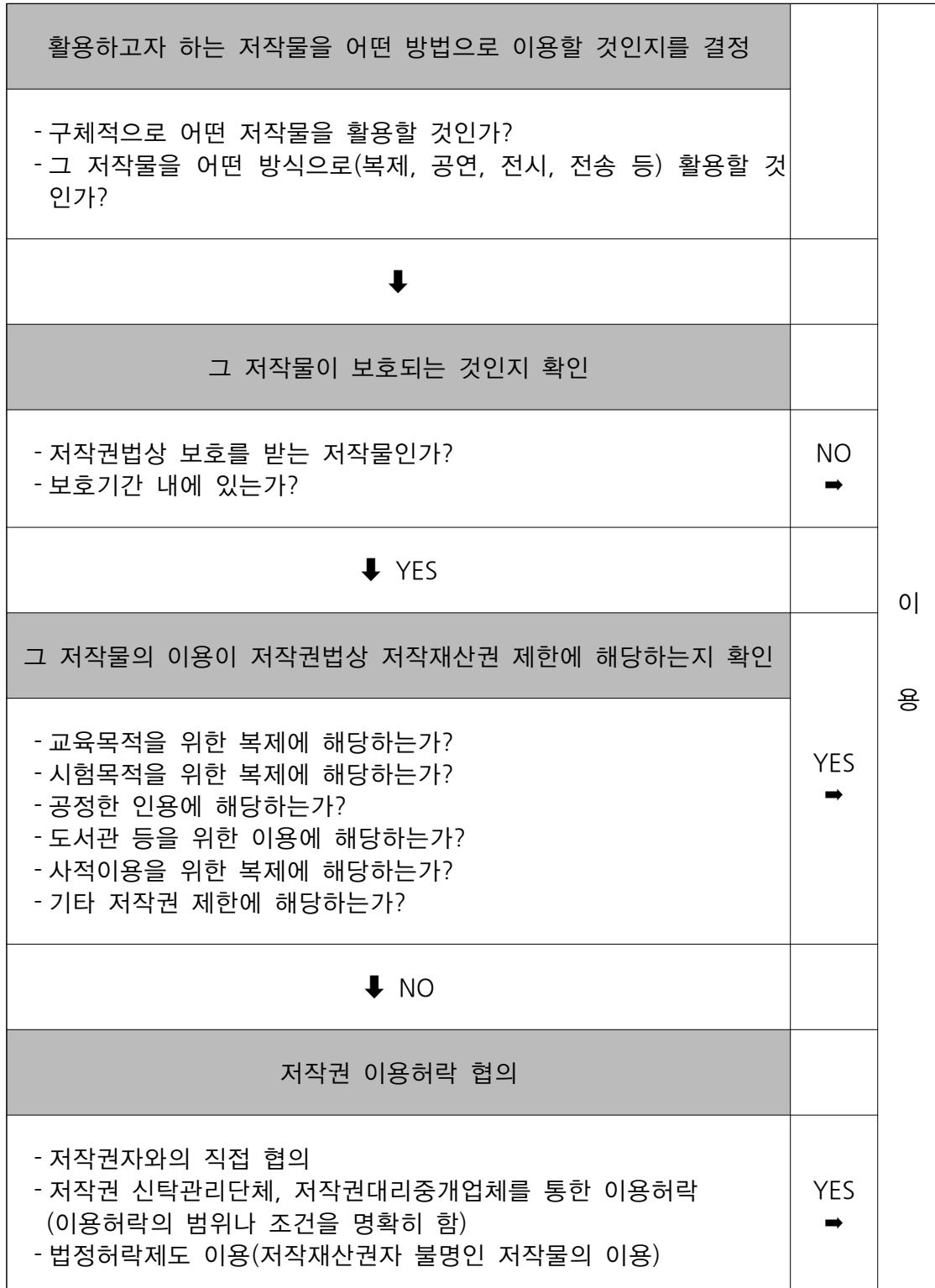
- 저작물 전체에서 보았을 경우의 이용되는 양

참고 : <미국의 멀티미디어 공정이용 기준>

- (1) 동영상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3분에서 짧은 것.
- (2) 어문 저작물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000단어 중 짧은 것. 시의 경우 1편의 시의 길이가 250어 이하의 경우는 전부 이용, 그러나 시인 1명에 대해 3개의 시까지 혹은, 다른 시인으로부터 완성되는 시집의 경우는, 1권의 시집으로부터 5개의 시까지. 250단어 이상의 시의 경우, 하나의 시로부터 250단어까지의 사용이 가능. 다만, 1명의 시인에 대해 3개의 시의 인용까지 혹은, 다른 시인으로부터 완성되는 시집의 경우는 1권의 시집으로부터 5개의 시의 인용까지 가능.
- (3) 음악, 가사, 음악 비디오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까지. 다만, 하나의 음악 저작물로부터 30초 이상 사용할 수 없다.
- (4)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 저작물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1명의 예술가의 작품의 사용은 5매를 한도로 한다. 결정된 작품집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이미지 합계의 수가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15매 중 적은 것.
- (5) 숫자 · 통계적 데이터 : 사용하는 부분을 합계했을 경우, 저작물 전체의 10% 또는 2, 500필드(셀, 매스)중 적은 것.

(라)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이용이 원 저작물의 시장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그림 1.7] 저작물 이용의 단계

## II.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저작권법상 이슈

### 1. 교수학습자료의 저작권 관리와 체제의 문제

급속히 디지털 기술이 진보하고 보급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연구, 관리의 여러 면에서 디지털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배경에는 디지털콘텐츠가 있고, 거의 모든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이 많은 경우에 타인의 디지털콘텐츠를 소재로 전용, 재이용, 제2차이용 등이 되고 있다. 또한 PC등 온라인 등의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 시간, 경제를 생각하면 소재로서의 이용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작권법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대학의 내부규정과도 관계된다. 그러나 대학, 일반 기업, 개인과 같은 저작권의 처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법률적으로 “대학에서 업무상 저작물”의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고, 저작권에 대한 대학의 지침(디지털, 아날로그를 불문하고)으로서의 저작권에 관한 정책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학습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아날로그에 관계없이 대학에서 제작·이용되는 저작물을 보고,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대학에의 귀속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자료가 가지는 저작권법과의 관계의 특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리의 체제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저작권 관련 저작물의 대학에의 귀속 등

대학은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관점으로부터 대학에서 제작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대학이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 그 법적 수단으로서는 ①업무상 저작물, ②영화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의 귀속,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계약에 의하여 대학이 양도/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lt;표 2.1&gt; 저작권 관련 저작물의 대학에의 귀속

구분	대학이 저작물을 귀속, 승계하기 위한 법적 수단	저작권의 소재	저작자 인격권의 소재	요건
1	업무상 저작물	대학에 귀속	대학	대학의 발의 등
2	영화의 저작물	대학에 귀속	저작자	저작자의 영화제작에 참가 약속
3	계약에 의한 저작권 승계	대학이 승계	저작자	대학과 저작자의 합의

#### 나. 교수학습자료 특유의 문제와 권리체제 등

교수학습자료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리 처리가 필요하지만, 타인이 제작한 소재의 이용에 해당하는 권리 처리와 학내에서 제작한 교수학습자료의 권리 귀속의 두 문제가 있다.

##### 1) 타인이 제작한 자료의 사용

타인의 저작권, 저작자인격권의 허락을 얻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권리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b의 경우 권리제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형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lt;표 2.2&gt; 교수학습자료 제작과정의 권리 귀속

타인의 권리	제작 과정		
	a. 자료의 수집, 검색	b. 자료의 복사, 기억매체에의 고정	c. 자료의 가공, 변경
저작권	불요	요	요
저작자인격권	불요	불요	요

(요 : 타인의 권리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음, 불요 : 필요 없음)

이미 서술한 것처럼, 권리허락을 얻는 것, 즉 저작권 권리처리는 실무상 매우 어렵고, 교수학습자료의 특징상 자료의 가공, 변경의 저작자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기관 등에 양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관리조차 할 수 없다.

대학에서 권리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다면, 적어도 대학에 귀속하거나 승계하거나 하는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권리허락의 절차를 진행시켜야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처리를 위한 조직, 관리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문제를 처리하거나 학내 혹은 다른 기관에서 제작된 교육 콘텐츠에 관한 계약을 실시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가 필요하고 인적 체제로서, 내부 기존 조직의 전문교육·훈련과 외부 전문가의 위촉 등이 고려된다.

## 2) 완성된 성과물의 권리 귀속

저작권일반에서 논의처럼 저작물의 귀속, 승계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자료의 특유의 문제에 대하여 대학 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의 귀속에 관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a. 대학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서, 사진
- b. 원격수업의 녹화, 디지털콘텐츠로 작성된 교육 툴
- c. 프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의 콘텐츠
- d. 학교외의 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화했을 경우의 성과물 등

## 2. 대학 교원이 작성한 교수학습자료에 관한 저작권 귀속 문제

대학교원의 창작물을 대학이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권의 귀속이나 이용허락 등에 대해서 대학과 창작자인 교원과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전무했다고 추측된다. 물론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대학이 저작자라고 평가되는 경우나 권리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학의 이용행위는 적법하다. 하지만, 교원의 창작물이라고 해서 그 저작자가 대부분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작물의 대학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모두 묵시적 허락이 성립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중시되는 요즘의 환경에서 교원의 저작권의식도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표면화 되지 않은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이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원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누구에게 저작권 등이 귀속되는지(권리의 귀속), 어떤 이용행위가 문제가 되는지(권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저작권법상의 문제들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 가. 저작자의 권리 귀속 유형

#### 1)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권(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0조). 이 중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양도 가능하여, 저작자 이외의 자에 귀속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작물이 창작되었을 때에 최초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영화의 저작물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자이다. 그럼 ‘저작자’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표현인 것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완성 자체에 공헌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러한 공헌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는 직접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는 창작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창작시에 설비, 자금, 기회의 제공이나, 단순한 아이디어의 제공에 머무르는 경우 그 자체는 창작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은 창작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 저작의 경우와 영화 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하는 경우 두 가지이다.

## 2) 업무상 저작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란 창작적 표현을 이룬 자이다. 창작행위는 자연인만이 해낼 수 있는 사실 행위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을 저작권법은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한편으로 창작 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창작행위를 한 자연인이 저작자인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 법인을 창작자와 의제하여 저작자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의 성립 요건, 프로그램 이외의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 (i) 법인 그 외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에 근거하여,
- (ii)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
- (iii) 그 법인 등이 자기의 저작의 명의아래에 공표하는 경우
- (iv) 작성 시에 계약, 근무 규칙 그 외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의 요건이 필요하다(저작권법 제9조).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경우 (iii)의 공표 명의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동법 제9조 후문).

물론 업무상 저작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연인인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는 것으로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법인 등은 저작권을 얻을 수 있어도 저작 인격권은 얻을 수 없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어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양도는 법인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저작자(저작권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직무저작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므로 저작 인격권도 법인에 귀속된다.

창작자인 자연인과 다른 특별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요건만 충족되어지면 업무상 저작은 성립된다.

### 3) 영화제작자의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영화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권이 ‘영화 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영화의 저작물은 전형적으로 다수자의 창작적 관여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법상 영화의 저작물에 대해서 몇 개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감독(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 제작 회사(영화제작자)에게 저작권이 각각 원시적으로 귀속한다(저작권법 제100조<sup>33)</sup>).

## 나. 대학관련 저작물에 관련한 권리의 원시적 귀속

### 1) 교원의 창작물 : 강의 콘텐츠

교원의 강의는 비록 그것이 구술이라 해도 저작물이다. 또한 교원이 작성하여 강의 시간에 배포하는 자료 등은 대부분이 저작물이 된다.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교원일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저작이 성립되어 대학이 저작자인가가 문제된다.

우선, 강의 자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의 성립 요건 가운데 요건(ii)(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원은 대학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강의를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건(i)(법인 그 외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에 근거)에 대해서도 그 충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건(i)에서 말하는 “기획”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특정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최초로 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밀한 의미로서 “기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업원이 최초로 발안했을 경우에 사용자에 의한 사후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발의는 긍정된다. 예컨대, 저작물 작성의 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에 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고 여겨진다. 교원의 강의 경우 적어도 간접적으로 그 작성의 의사가 사용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33)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요건(iii)(그 범인 등이 자기의 저작의 명의 아래에 공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교원의 강의는 통상 그 교원의 명의 하에 공표된다. “00대학 A교수”라고 하는 명의라고 하여도, “00대학”의 저작 명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요건(iii)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교원의 강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저작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로 배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대학명이 저작 명의로서 표시되는 것은 거의 없고, 교원 자신의 저작 명의가 첨부되고 있고 과목명만이 첨부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원래 배포자료의 작성 자체는 교원 자신의 자유 의지에 맡겨지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배포자료 자체는 직무상 작성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ii)에 대해서도 충족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대학교수가 작성한 강의안의 저작권은 대학이 아니라 교수에게 귀속된다는 판례가 있었다.<sup>34)</sup> 대학교수의 강의안은 독자적인 것이고 대학이 강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지시 내지 규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교사의 경우에도 적용된 예가 있어 이를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교사의 예외(teacher exception or academic exce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sup>35)</sup> 교수나 교사의 강의안 작성은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일로서 ‘업무상 작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헌법상 학문의 자유 등과의 관계에서 그 내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강의안을 토대로 작성된 저서나 연구논문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수 등 개인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특별히 범인 등의 저작물로 보아야 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저작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sup>36)</sup>

## 2) 교원의 창작물 : 연구 성과물

교원의 연구 성과물은 어떨까? 우선, 프로그램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명의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대학 명의로 공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건(iii)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은 성립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예로 교원 명의로 논문이나 저서를 공표·출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요건(ii)에서도 문제가 된다. 즉, 연구 성과물인 저작물은 교원의 직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학 교원은 강의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 작성을 업무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연구 활동에 대해서 교원의 직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의 연구 성과물인

34) Williams v. Weisser, 273 Cal.App.2d 726, 78 Cal.Rptr. 542, Cal.App. 1969.(June 05, 1969)

35) 임원선(책임집필),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6), 75면.

3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223-224면 참조

저작물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연구라고 하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그 자체가 업무상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건(ii)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상 저작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대학 교원의 연구 성과인 발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진흥법 제10조<sup>37)</sup>에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이해된다. 교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무발명으로서 직무발명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에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전되는 한편,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저작자는 교원이며, 일방적으로 대학 측에 이전할 수 없다. 특허법상의 직무발명과 저작권법상의 직무저작과는 그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 즉, 전자의 경우 창작자(발명자)로서의 지위는 실제로 창작을 한 자에게 인정되고 특허를 받을 권리가 그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어 사용자는 그것을 근무 규칙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에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상당한 대가를 발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원래 창작자(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사용자 등이 획득하고, 실제로 창작을 한 자에 대해서 대가의 지불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효과가 다르다면, 성립범위가 다른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직무 저작의 경우 창작을 실제로 한 자에게 상당한 대가 등의 보장도 없고, 창작시에 일방적으로 인격권도 포함한 권리가 사용자 측에 이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다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3) 교원이 심사한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대학교육의 결과물이고 지도교수의 수고와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완성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논문을 작성한(창작한) 작성자가 저작자이며 저작권자이다. 학위논문 표지에 00대학이라는 표시라고 하여 대학출판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문의 공개 및 이용허락은 저작자인 학생에게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두 대학이 학위논문을 자신의 도서관 또는 외부 도서관에 공개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도서관 원문서비스와 저작권 동의를 받지 않은 일부 학위논문의 원문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37) 제10조(직무발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III. 대학 공개강의 저작물 제작 유통을 위한 관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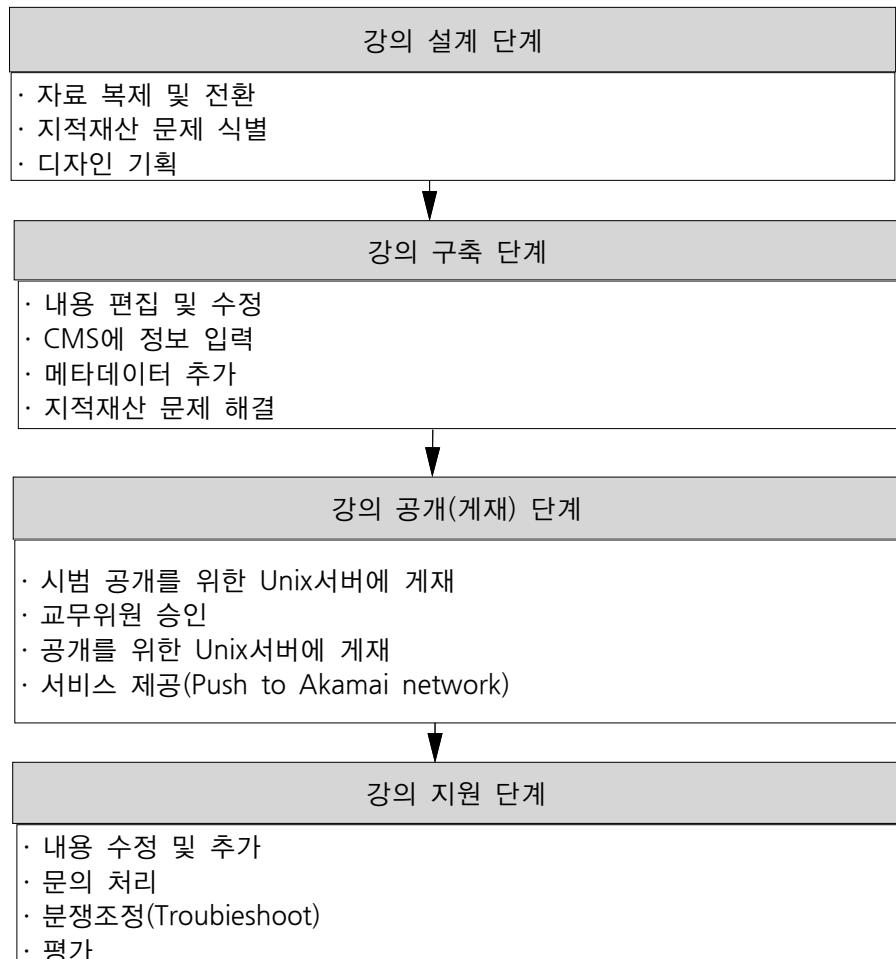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교수의 강의방법을 개발하거나 수업매체 제작 등을 지원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sup>38)</sup> 각 대학은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 교수, 전임 연구원 제도를 두고 있고,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적자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학습자료의 상호 공유에 따른 저작권 관리 및 체계적 시스템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기존의 매체 및 자료, 원격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지원 서비스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교수학습자료의 활용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 있다.

#### 1. 대학 공개강의 저작물 서비스 유형 및 단계

OCW 콘텐츠 서비스 단계는 강의 설계, 강의 구축, 강의 공개, 강의 지원으로 총 4단계로 구성되어있다. 강의 설계 단계에서는 강의 공개를 선정하고, 지적재산권 검토와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강의 구축 단계에서는 강의 내역,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변환(PDF Format), 강의 자료와 관련한 저작자 및 저작권 관련 정보 등을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CMS))에 입력한다. 강의공개(게재) 단계에서는 시연, 학부에서의 확인 작업 및 교원의 요구 때마다 검토를 반복하고 공개 한다. 마지막으로 강의 지원 단계에서는 강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잘못된 링크의 수정 등과 같은 작업을 진행한다.<sup>39)</sup>

38)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도 교수의 강의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돋기 위한 독립 시스템으로 ‘교수 학습지원 센터’를 대학의 핵심 기구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신봉섭, 미국의 교수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교수신문 (2001.3.19).

39) <http://www.bb.ustc.edu.cn/ocw/OcwWeb/HowTo/content-mit-approach.htm>(2010년 10월 방문)



[그림 3.1] OCW의 콘텐츠 게재 프로세스

## 2.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 단계별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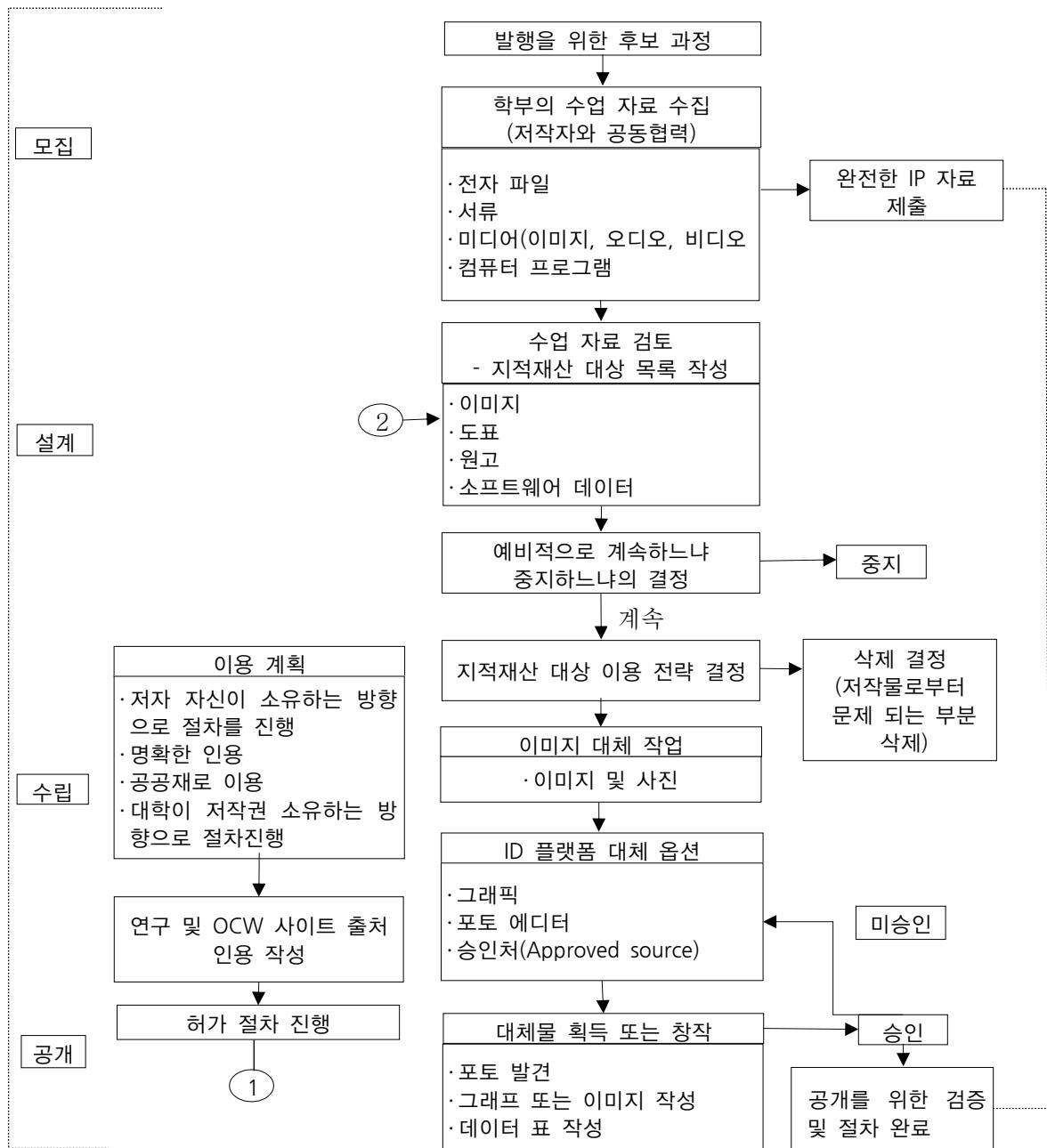
OCW의 예비(사전) 단계에서 제작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적재산) 허가 및 승인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설된 학과는 IP 부분을 확인받아야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IP 승인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수반되는 작업이고, 이것은 대학의 학부 및 기관이 OCW에 참여하는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OCW의 초기에 IP 규칙(행동규범 : 지켜야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IP 승인 절차에 그 규칙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들을 마련하였다.

OCW의 IP 심사 및 승인 절차는 예비단계에서 제작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용된다. 전체적인 절차는 두 가지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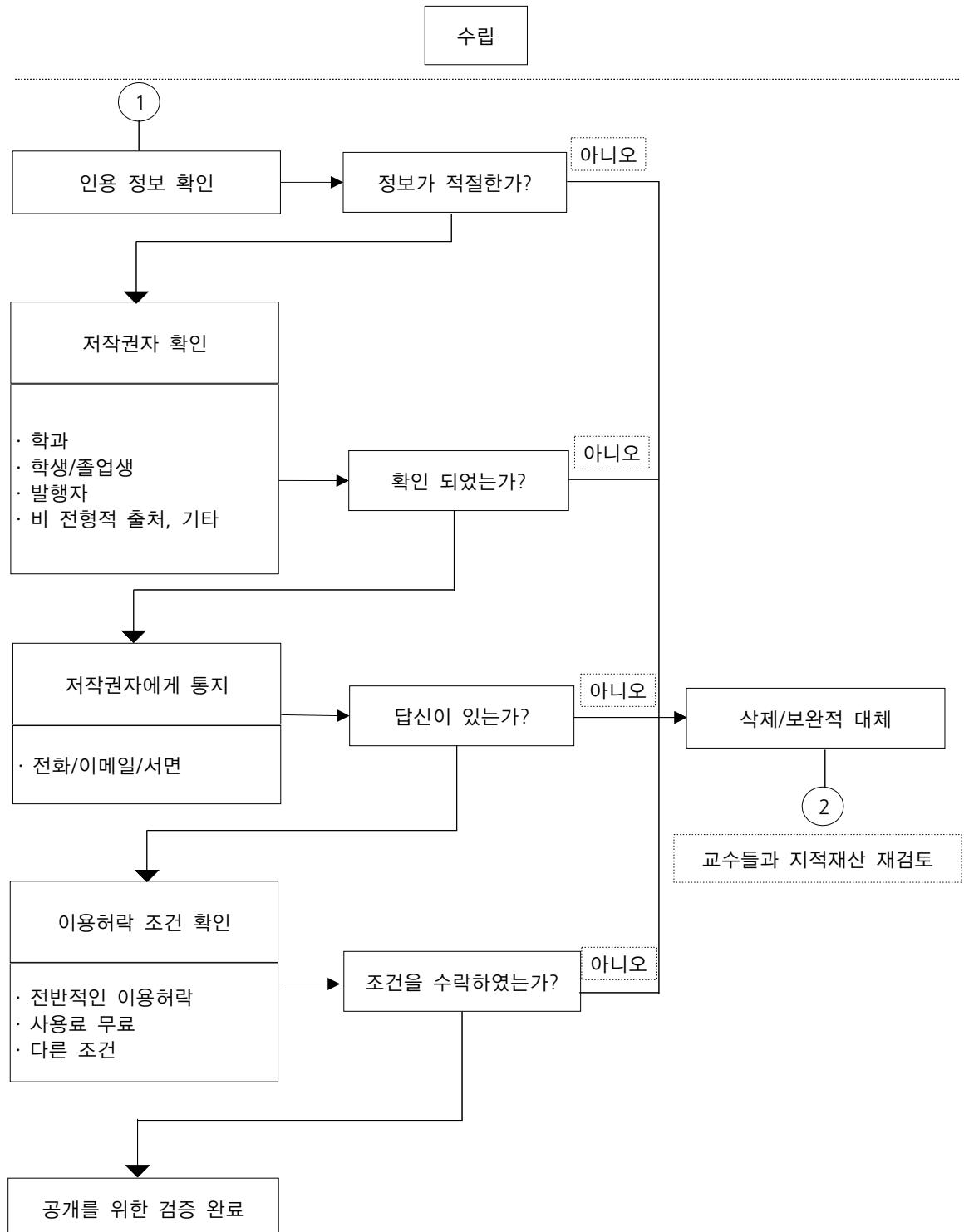
- 학부에서 그들의 수업을 공개한다는 승인을 획득
- 콘텐츠의 소유권을 확인, 타인(제3자)의 저작물 처리 및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는 적절한 조치를 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IP의 문제를 해결

다음의 상세한 IP 처리 절차도는 OCW의 제작 단계에서 이용되는 것이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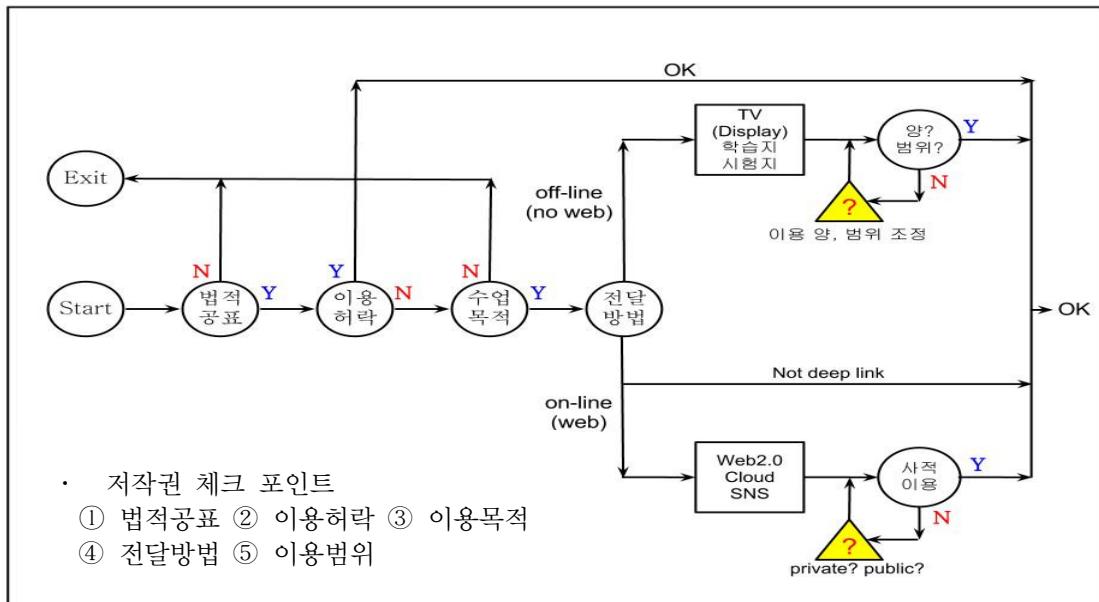
[그림 3.2] IP 심사 및 처리 절차

40) <http://www.bb.ustc.edu.cn/ocw/OcwWeb/HowTo/IP-Licensing.htm>(2010년10월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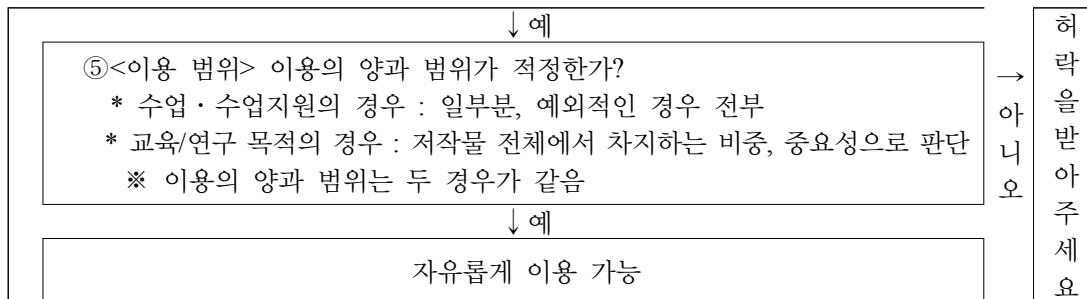
[그림 3.3] 타인의 IP 허락 및 이용 절차

## IV.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절차 및 공정이용 체크리스트



### 1. 저작권 체크 포인트별 체크리스트

① <법적공표> 적법하게 획득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인가?	→ 아니오
* 불법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자료일 것 * 공표된 자료일 것 * 저작물에 해당할 것(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용가능)	
↓ 예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허락> 이용허락을 사전에 받았나요?	
*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미리 표시한 경우(CCL, 이용허락표시제도) 그 요건에 맞게 이용 * 기부저작물의 이용인 경우 그 요건에 맞게 이용	
↓ 아니오	
③ <이용 목적> 수업 · 수업지원 목적 / 교육 ·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수업 · 수업지원의 경우 : 수업목적에 해당되는지가 중요 표지가 됨 *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 : 생산적 이용에 해당되는지가 중요 표지가 됨 ※ 수업 목적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시 교육/연구의 경우의 요건 충족 시 공정하게 이용 가능	
↓ 예	
④ <전달 방법> 온라인의 경우 기술적보호조치를 하였는가?	→ 아니오
* 수업 · 수업지원의 경우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의무사항) *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 2. 체크 포인트 해설

### 가. <법적공표> 적법하게 획득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인가?

\* 불법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자료일 것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복제/전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의미함
- 불법한 저작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복제 전송 등이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불법적으로 획득한 저작물 이용’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결정>

-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 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공표된 자료일 것

- 어떤 저작물이 공표되었는지 아니면 미공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은,
- “공표”의 예
  - ❖ 출판사가 펴내어 서점에 나와 있거나 과거에 서점 등을 통해 유통된 적이 있는 책들이나 음반으로 제작되어 매장에 나온 것, 혹은 대여점에 나온 것 등
  - ❖ 온라인상의 저작물 유통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일반인이 검색하여 접근 할 수 있게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는 저작물의 경우
  - ❖ 특정 블로그, 카페 등의 회원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인간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회원수가 다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는 까페, 인트라넷 등에 올린 경우
- “미공표”의 예
  - ❖ 개인이 작성하여 아직 출판하지 않은 미공개 원고나 일기, 편지 등을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일 경우
  - ❖ 가족 친지 또는 소수의 동호회원 등만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 올려 졌을 뿐 다른 곳에 공개된 적이 없는 저작물인 경우

### \* 저작물에 해당할 것(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용가능)

#### ● 법령, 판결 등 공공저작물

헌법, 법률, 조약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누구나 이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 행위로 보지 않는다.

#### ●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또는 유선 방송의 보호 기간이 종료하고 있는 경우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자유이용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권 만료 저작물의 이용 허락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공유마당 사이트(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http://gongu.copyright.or.kr/index.do>)

#### (참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50년에서 70년으로 통일)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나. <이용허락> 이용허락을 사전에 받았는가?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b>저작자표시</b>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
	<b>저작자표시-비영리</b>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b>저작자표시-변경금지</b>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b>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b>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b>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미리 표시한 경우(CCL, 이용허락표시제도)에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CCL)을 통해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 그 표시 조건에 맞도록 이용하면, 권리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 기부저작물  
 기부 저작물은 에듀넷(<http://www.edunet.net>)을 통해 전국 교사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기부 저작물은 그 기부 조건에 따라 이용하거나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다. <이용 목적> 수업·수업지원 목적 / 교육·연구 목적에 해당하는가?

●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 : 생산적 이용에 해당되는지가 중요 표지가 됨
* 교육/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 영리적인 이용에 비하여 공정이용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음(이 경우, 교육 또는 연구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넓어짐)
- 그 이용이 생산적 이용(새로운 표현, 의미 등으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욱 높아짐
- 다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 라. <전달 방법> 온라인(전송)의 경우 기술적보호조치를 하였는가?

- 수업 · 수업지원의 경우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의무사항)
  - \* 전송을 하는 경우,
    - i.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ii.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iii.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iv.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는 보상금지급 하지 않음)
-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 :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 \* 전송을 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함

## 마. <이용 범위> 이용의 양과 범위가 적정한가?

- 수업 · 수업지원의 경우 : 일부분, 예외적인 경우 전부 이용 가능
- 교육/연구 목적의 경우 : 공정한 관행 및 정당한 범위 또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요성을 가지고 판단
  - 우리나라에는 일부분/정당한 범위/ 비중 등에 관한 정량적(분량적)인 기준이 없음

### <미국의 서적/멀티미디어에 관한 이용 기준>

- 영화, 비디오, TV, DVD (영상 미디어) - 10% 또는 3 분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시, 산문, 희곡 (텍스트) - 10% 또는 1000자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시인 한 사람 당 3개의 시 또는 여러 저자의 시선 집 중 5개 시 이하 - 시의 경우 250자 제한도 있음
- 가사, 뮤직 비디오, 음악 녹음 - 한 작품에서 10% 그리고 30초 미만 - 뮤직 비디오의 오디오 파일도 포함 - 메인 멜로디는 유지되어야 함.
-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만화 - 한 멀티미디어에 포함된 저작자의 저작물 중 5편을 넘지 않아야 함 - 10% 또는 한 소스(책, 웹페이지, CD)에서 15 편의 이미지를 넘지 않아야 함.
- 숫자 데이터(스프레드 시트, 데이터베이스, 차트형태의 통계 자료) - 10% 또는 2500필드 이하(둘 중 더 적은 쪽으로 선택)

\* 이용의 양과 범위는 두 경우가 일치하게 해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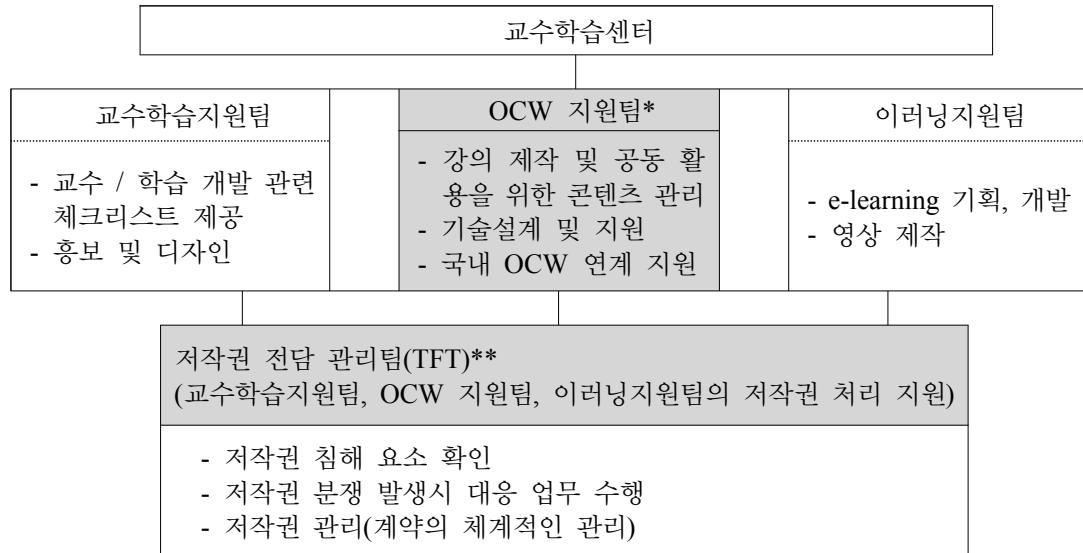
## V. 대학에서의 저작권 관리 체제 방안

### 1. 대학에서 저작권 관리 체제(안)

OCW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규의 수업 강의를 인터넷상에서 무상 공개하여, 대학의 지적 산출물을 폭넓게 유통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지만, 저작권의 문제로 인하여 참여 내지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OCW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기관에서는 다량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의 문제(권리 귀속이나, 관리하여야 할 저작물의 범위, 방법 등)는 산적해 있고, 이와 더불어 저작권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대학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 내 저작권 관련 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계약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 따라서 교수의 강의방법을 개발하거나 수업매체 제작 등을 지원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콘텐츠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저작권 관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현장 중심적·체계적·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일관된 저작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 전담팀’ 내지 ‘지적재산권본부’라는 전문센터 내지 저작권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학내의 강의 자료 및 수업 운영과 관련된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 판단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수들이 강의 공개 시 수업에서 활용되었던 교수학습자료의 저작권 저촉문제를 제거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학 강의 공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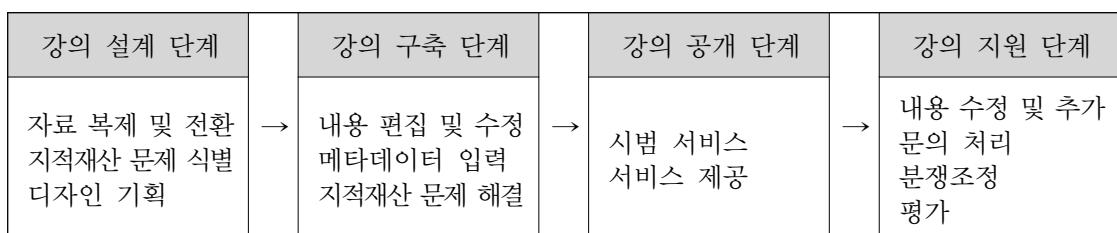
[그림 5.1] 조직체계 신설(안)

\* 주요 담당자 : 프로그램 매니저(1명), 행정 전담 직원(2명)

\*\* 각 팀별 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공동으로 저작권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OCW 지원팀은 OCW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 콘텐츠 관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법적 장애(저작권 문제), 기술적 장애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단계별 콘텐츠 관리는 제작 단계에서 공개서비스까지의 일련의 진행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해결한다.

#### 단계별 콘텐츠 관리 사항



저작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전담 관리팀과 협의하여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저작권 전담 관리 팀은 OCW 서비스에 장벽이 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 지침(행동규범 :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 승인 절차에 그 규칙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저작권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별 가이드라인

### 가. 신규 강의 제작의 경우

#### 1) 강의 기획 단계

강의 공개를 교내로 한정할 것인가, 교내 이외에서도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강의공개자에게 강의공개에 따른 콘텐츠 계재 절차(파일 전환, 메타데이터 입력 등), 저작권 확인사항 및 처리 지침 등을 제공한다.

#### 2) 강의 준비 및 계약 단계

강의 내역,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 변환, 강의와 관련한 저작권 관련 정보 확인(제3자의 자료의 활용 및 이용 조건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OCW 팀과 협의 한다. 또한, 강의 공개에 따른 이용범위 내지 기간 등에 관하여 저작권자(강의 작성자)와 대학기관이 저작권계약서를 작성한다.

#### 3) 강의 촬영 단계

강의 촬영과 관련하여서, 강좌 참여자(학생 등)의 초상·발언 등이 공개되는 경우 강의 참여자의 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 4) 편집 단계

공개 예정 강의 자료의 내용 확인과 공개에 관한 최종 허락을 받기 위하여, 타인 저작물 인용 정보 확인 및 저작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처리한다. 공개 예정자료 확인시에 실제로 공개할 때와 같은 형식에서 웹사이트에 교육 자료를 등록하고, 교원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해도 좋은가를 확인하게 한다.

### 신규 강의 제작 시 프로세스별 권리처리 내용

구분	강의 제작	권리처리 내용
①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자료의 이용 범위의 검토</li> <li>▶교내에서의 이용</li> <li>▶교내 이외에서도 이용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라인 제공</li> <li>· 권리 처리 방침의 검토</li> </ul>
② 강의준비 및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자와 대학(담당자)과의 협의</li> <li>· 저작권에 대한 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등 처리<sup>41)</sup> 계획서<sup>42)</sup>의 작성</li> <li>· 의뢰 조건의 검토</li> <li>· 제삼자의 자료의 활용 및 이용 조건의 검토</li> <li>· 권리, 계약의 사전 확인, 허락(사용 소재·자료 등 포함)</li> <li>· 권리의 사전 확인, 허락 등</li> <li>· 권리 처리 체크리스트 작성</li> <li>· 저작권 계약서(양도 내지 이용허락서) 작성</li> </ul>

③ 촬영	·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시 체크</li> <li>· 강좌 참여자(학생 등) 초상·발언 등</li> </ul>
④ 편집	· 제 1 차 편집 및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 저작물 인용시 주의 사항 확인(출처 등의 표시 등)</li> <li>· 교수/강사(저작자)등에의 확인</li> </ul>
	· 제 2 차 편집 및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문제 소재가 있는 부분들의 수정(개인정보 내지 부적절한 용어 등의 수정)</li> <li>· 권리자에게 최종 확인</li> </ul>

## 나. 기존 강의 활용의 경우

### 1) 강의 기획 단계

강의 공개를 교내로 한정할 것인가, 교내 이외에서도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강의공개자에게 강의공개에 따른 콘텐츠 계재 절차(파일 전환, 메타데이터 입력 등) 및 저작권 확인사항 및 처리 지침 등을 제공한다.

### 2) 강의 자료 권리 처리 및 계약 단계

강의 내역,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 변환, 강의와 관련한 저작권 관련 정보 확인(제3자의 자료의 활용 및 이용 조건의 검토) 등을 OCW 팀과 협의한다. 또한, 강의 공개에 따른 이용범위 내지 기간 등에 관하여 저작권자(강의 작성자)와 대학기관이 저작권계약서를 작성한다.<sup>43)</sup>

### 3) 편집 단계

공개 예정 강의 자료의 내용 확인과 공개에 관한 최종 허락을 받기 위하여, 타인 저작물 인용 정보 확인 및 저작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처리한다. 공개 예정자료 확인시에 실제로 공개할 때와 같은 형식에서 웹사이트에 교육 자료를 등록하고, 교원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해도 좋은가를 확인하게 한다.

41) IP 심사 및 처리 절차(IP review and clearance process)(그림 8) 및 타인의 IP 허락 및 이용 절차(Third-party IP Permissions sub-process)(그림 9) 참조.

42) 계획서의 내용 예시 : ① 전문 부서·전문가의 협력의 유무(대학기관 내의 지적재산팀, 저작권팀 등 / 외부 법률 전문가 위촉) ② 담당 업무 체제(저작권 등 권리 처리를 담당하는 인원 및 업무분담) ③ 콘텐츠의 주된 저작자 와의 계약 방법(어느 시점에서 계약할까) ④ 저작물의 권리자와의 계약 방법 ⑤ 콘텐츠 출연자(강좌 참가자)의 초상권 처리 ⑥ 강좌 참가자로부터 승낙이 거부된 경우의 대응 ⑦ 개인정보·부적절한 용어의 체크 체계 및 대응

43)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3. 대학에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저작권 계약 관리’ 부분 참조.

### 기준 강의 활용에 따른 권리처리 내용

구분	강의 제작	권리처리 내용
① 기획	강의 자료의 이용 범위의 검토 ▶교내에서의 이용 ▶교내이외에서 이용	가이드라인 참조 권리 처리 방침의 검토
② 권리처리 준비 및 계약	강의자(저작자)와 대학(담당자)과의 협의	저작권 등 처리 <sup>44)</sup> 계획서 <sup>45)</sup> 의 작성 기존 콘텐츠의 권리처리 확인 신규 권리 처리의 요부 확인 권리처리 작성
	계약 체결	권리의 확인 및 허락 계약서(양도 또는 이용허락서) 작성
③ 편집 및 가공	필요한 편집 및 가공	저작권 문제 소재가 있는 부분들의 수정 (개인정보 내지 부적절한 용어 등의 수정) 권리자에게 최종 확인

## 3. 대학에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저작권 계약 관리

### 가. 대학에서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의 저작자

#### 1) 법인저작(업무상 저작)에 관하여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이어서, 통상은 자연인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9조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저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은 모두 법인에게 귀속된다. 그 때문에 실제로 개발에 종사한 자에게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은 직무발명과는 크게 다르다.

44) IP 심사 및 처리 절차(IP review and clearance process)(그림 8) 및 타인의 IP 허락 및 이용 절차(Third-party IP Permissions sub-process)(그림 9) 참조.

45) 계획서의 내용 예시 : ① 전문 부서·전문가의 협력의 유무(대학기관 내의 지적재산팀, 저작권팀 등 / 외부 법률 전문가 위촉) ② 담당 업무 체제(저작권 등 권리 처리를 담당하는 인원 및 업무분담) ③ 콘텐츠의 주된 저작자 와의 계약 방법(어느 시점에서 계약할까) ④ 저작물의 권리자와의 계약 방법 ⑤ 콘텐츠 출연자(강좌 참가자)의 초상권 처리 ⑥ 강좌 참가자로부터 승낙이 거부된 경우의 대응 ⑦ 개인정보·부적절한 용어의 체크 체계 및 대응

## 2) 대학에서 개발된 교재의 저작자

대학에서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서 업무상 저작물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저작자가 된다. 이것은 대학에서 개발되는 교수·학습자료에 대해서도 같다. 이처럼 교재의 개발이 교원의 직무인가 등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대학인가, 교원인가 저작권의 귀속을 어떻게 할까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내에서 개발되는 강의용 콘텐츠의 권리 귀속 등에 대해서는, 대학이 저작자(업무상 저작)가 되는 경우, 교원이 저작자로 대학에 저작권이 양도되는 경우, 교원이 저작자로 대학에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로 크게 세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주된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5.1> 대학과 교원간 강의용 콘텐츠의 권리 귀속

구분	저작자	권리귀속		특징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업무상 저작	대학	대학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3자에게의 이용 허락이나 저작권 양도도 가능)</li> <li>교직원에게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없음(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저작권 양도	교원	교원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은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제3자에게의 이용 허락이나 저작권 양도도 가능)</li> <li>교원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학의 허락이 필요함(일정 범위의 이용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에 정할 필요가 있다)</li> </ul>
이용허락	교원	교원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은 허락의 범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li> <li>교원은 원칙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li> </ul>

## 나. 대학에서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의 저작권 등 취급

대학에서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었을 때의 저작권 취급에 관하여,

- ① 대학을 저작자로 하는 경우(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도 대학에 귀속)
- ② 교원을 저작자로서 대학이 저작권의 양도를 받는 경우
- ③ 교원을 저작자로서 대학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
- ④ 교원을 저작자로서 대학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의 4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④의 경우(예를 들면, 교재의 작성이나 사용을 교원에 맡기고 대학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학으로서 특별히 취급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①-③에 대해서는 대학으로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대학을 저작자로 하는 경우

대학이 저작자가 되면 대학은 그 교재에 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고, 대학은 그 교재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하는 것이 자유롭다.

대학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저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취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대학 발의가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예를 들면, 학내에 교수·학습지원 위원회나 교수·학습자료 개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교재를 결정한다.

#### ② 대학의 교원이 교재를 개발(종사하는 자가 작성)

대학의 교원(대학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교재를 개발한다. 또한, 외부에 작성은 위탁한 경우 저작자는 수탁자가 되어 대학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

#### ③ 개발이 교원의 직무에 해당

예를 들면, 개발에 종사하는 교원을 교수·학습자료 개발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과 동시에 위원회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해당 교원의 직무일 것을 밝혀야 한다.

#### ④ 대학의 저작 명의로 공표할 것

예를 들면, 위원회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공표시에 “00대학 저작”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이 저작자가 될 것임을 밝힐 것

예를 들면, 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교재의 저작자는 대학일 것을 밝힌다(또한, 상기의 조치는 대학이 저작자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조치가 없어도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대학이 저작자가 된다).

### 00대학 교수·학습자료 지원위원회 규정(예)

**제00조** 위원회는 이하의 임무를 수행한다.

(0) 대학으로서 개발하는 교수·학습자료의 결정

**제00조** 위원회는 교수·학습자료 마다, 본 대학의 교원중에서 교수·학습자료 개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0) 교수·학습자료 개발 위원은 직무로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00조** 본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의 저작자는 00대학으로 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공표할 때에는 “00대학 저작”이라고 표시한다.

또한, 업무상 저작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개발에 종사한 교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가 되지 않으므로, 교원의 인센티브가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재에 저작자의 표시와는 별도로 개발 담당자명으로서 교원의 이름을 표시한다. 그리고 교원의 업적 평가시 실적의 하나로 평가하는 등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2) 교원을 저작자로서 대학이 저작권의 양도를 받는 경우

개발에 종사한 교원을 저작자로서 평가하는 것으로서 교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한편 대학으로서 개발한 교재를 대학의 지적재산으로서 활용하고 싶은 경우 교원을 저작자로 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시키는(양도)것을 생각할 수 있다.

대학이 저작권을 양도 받을 경우 대학은 저작권자로서 스스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교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 방법에 대하여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저작권의 양도를 받는 경우에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한다.

##### 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체크 사항)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는, 저작권의 어느 범위를 양도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어디까지 세분화해 양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에 열거되어 있는 권리(‘지분권’이라고 합니다.)마다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무상 개별적인 권리로서 구별되어 취급되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음악의 저작물의 경우, 인쇄·출판할 권리, 녹음권, 영화 녹음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실무상 취급되고 있다.)는, 독립하여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는 ‘사용권’이나 ‘이용권’이라고 하는 이름의 권리는 없다. 양도 대상이 될 권리라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저작권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물의 복제를 하는 경우 복제권, 저작물을 서버에 축적하여 전송하는 경우 복제권과 전송권 등과 관계된다. 저작권 일부의 양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권리가 무엇인가 잘 검토한 뒤에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양도의 목적으로서 특별히 명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따라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양도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내용을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 ② 저작 인격권의 행사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함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시에 저작자명의의 표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내용이나 표제가 변경되지 않을 권리(명기된 저작자명의를 가지고 있고, 저작자명의 표시 방법이나 교재를 수정할 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갖는다. 따라서 저작자 명의 표시 방법이나 교재를 수정할 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 및 양도인(이하 ‘갑(교원)’이라 한다)과 양수인 (이하 ‘을(대학)’이라 한다).

### 저작재산권 양도 규정(예)

**제00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① 갑의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을 교육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보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 등을 입은 때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조(저작권의 재양도)** ① 을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을 양도하면 저작자여도 저작권자(대학)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저작자인 교원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이면 대학의 허락 없이 그 교재를 이용해도 괜찮다는 취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의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학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3) 교원을 저작자로서 대학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

대학이 교재를 이용만 하는 경우 저작권을 개발에 종사한 교원에게 남긴 채로 이용의 허락만을 얻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이용 방법을 미리 명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 스스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등의 제3자에게도 이용시킬 경우 그 취지를 반드시 명기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작자인 교원의 인격권의 행사 방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용에 대하여 규정할 것인가는 각각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학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규정(예)

**제0조 (이용의 허락)** 갑은, 을에 대해, 갑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 ( )을, 이하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비영리의 교육 목적의 것에 한정한다.)을 허락한다.

- (1)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 (2) 방송, 그 외 본 저작물에 관한 모두의 이용(기술 등의 진보에 의해 장래 생길 수 있는 이용 형태를 포함한다)

- 덧붙여 예정하지 않았던 이용이 생겼을 경우는, 별도 협의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 (유의점)

- ① 상기 규정 예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예시이며, 실제의 계약 내용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교수 학습자료에 기존의 저작물 등(예를 들면, 영상, 사진, 도표, 음악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되거나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일본의 경우처럼 저작물 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함).

## 참고문헌

- 김홍래, 변용완,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연구(연구보고 CR 2012-16), 2012.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09)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7)
- 이형하,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 재판자료(제57집), 법원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저작권법 해설(2009.8)
- 신봉섭, 미국의 교수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교수신문(2001.3.19)
- 곽창순,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http://kautm.net/칼럼방>).
- KOCW : <http://www.kocw.net/home/introduce/intro1.do>
- [http://www.snu.ac.kr/about/ab0401\\_rule.jsp?top\\_reg\\_id=41&mid\\_reg\\_id=129&search\\_top=41&search\\_mid=129](http://www.snu.ac.kr/about/ab0401_rule.jsp?top_reg_id=41&mid_reg_id=129&search_top=41&search_mid=129)(서울대학교)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Giving Knowledge for Free THE EMERGENCE OF OPEN EDUCATIONAL  
RESOURCES, 2007(CERI)
- Wiley, D. (2006), "On the Sustainability of Open Educational Resource Initiatives in  
Higher Education", available at: [www.oecd.org/edu/oer](http://www.oecd.org/edu/oer).
- Carson, S. (2006), "2005 Program Evaluation Findings Report - MIT OpenCourseWare",  
5 June.
- Lerman, S. and S. Miyagawa (2002), "pen Course Ware -A Case Study in Institutional  
Decision Making" Academe, Vol. 88(5), September/October, available at:  
[www.aaup.org/publications/Academe/2002/02so/02soler.htm](http://www.aaup.org/publications/Academe/2002/02so/02soler.htm)
- Wiley, D. (2006), "n the Sustainability of Open Educational Resource Initiatives in  
Higher Education" available at: [www.oecd.org/edu/oer](http://www.oecd.org/edu/oer).
- MIT OCW : <http://ocw.mit.edu/about/our-history/>
- MIT : <http://www.mit.edu/afs/athena/org/t/tlo/www/guide.toc.html>(Guide to the Ownership,  
Distribution and commercial Development of M.I.T. Technology)
- MIT OCW : <http://www.bb.ustc.edu.cn/ocw/OcwWeb/HowTo/content-mit-approach.htm>
- Harvard : <http://www.techtransfer.harvard.edu/PatentPolicy.html>(Copyright Policy)
- Stanford : <http://www.stanford.edu/dept/DoR/rph/5-2.html#Sec1>(Copyright Policy)
- 岸本 織江, 教育用コンテンツ開発にあたって利用する既存の素材の著作物性, 独立行政

- 法人メディア教育開発センター(平成20年(2008年)2月).
- 加戸守行, 「著作権法 逐條講義」4版, 社團法人 著作権情報センター(2003年)
- 川原 健司, 引用の適法要件,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最新号(第2巻), 2007年9月).
- 上野達弘, 「引用をめぐる要件論の再構成」(著作権法と民法の現代的課題), 半田正夫先生  
古稀記念(法学書院, 2003年).
- 立命館大学, 大学における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知的財産権管理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大学知的財産本部整備事業」21世紀 型産学官連携手法の構築に係る  
モデルプログラム研(平成16年(2004年)).
- 文化庁「自由利用マーク」: [www.bunka.go.jp/jiyuriyo](http://www.bunka.go.jp/jiyuriyo)
- JOCW : <http://www.jocw.jp/>
- Ritsumei : [http://www.ritsumei.jp/research/c04\\_02\\_j.html](http://www.ritsumei.jp/research/c04_02_j.html)
- Kyoto OCW : <http://ocw.kyoto-u.ac.jp/jp/copyright/copyright09.htm>.



연구자료 RR 2015-1

---

## 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관리 방안

---

발 행	2015년 1월
발행인	임 승 빙
발행처	<b>한국교육학술정보원</b> (www.keris.or.kr)
주 소	⑨701-310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351) 전화: 053)714-0114 팩스: 053)714-0198
등 록	제22-1584호(1999년 7월 3일)
인쇄처	기쁨 D&P 전화: (053) 964-2101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 \* 대학공개강의서비스(KOCW) : <http://www.kocw.net>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 <http://www.riss.kr>
-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 <http://www.rinfo.kr>